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중 개정조항[4.3]

2.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1. 공통사항(신설 2000.4.3)

(1) 생활폐기물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법 제 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가 이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하는 폐기물(이하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 한다)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

기본법 제 28조(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고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완공일부터 10년의 범위내에서, 기타 구조로 된 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완공일부터 5년 범위내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 책임이 있다.

시행령 제30조 (하자담보책임기간)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별표4의 건설 공사에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 30조)관련에 의하여 15항 전문공사(14번 보일러설치)는 하자보증기간 1년

기본법 제44조(건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건설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건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가 발주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일 때에는 발주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 수급인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배상할 책임 있는 하수급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기본법 제 96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9.4.15)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한 자
 삭제 (개정 99.4.15)

제17조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건설업을 영위한 자
 제 21조 규정에 위반한 건설업자 및 그 상대방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삭제 (개정 99.4.15)

정당한 사유없이 제82조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에 위반한 자

건설산업기본법

구분	건설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가스시설 시공업 (제1종)- <개정99.8.6>	제2종 및 3종의 업무내용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변경조사 액화석유가스의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 저장소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도시가스 시설중 특정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저장능력 500kg이상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가스시설 시공업 (제2종)- <개정99.8.6>	제3종의 업무내용 도시가스 시설중 특정 가스사용시설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관 분리되는 부분 이후의 보수공사 배관에 고정 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 저장능력 500kg미만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액화석유 가스판매시설의 설치변경공사	
	가스시설 시공업 (제3종)- <개정99.8.6>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공사로서 공사 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공사 1. 도시가스 사용시설중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 2.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중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	

구분	건설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난방 시공업(제1종)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51조 규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중 강철재보일러주철제보일러 온수보일러구명탄보일러축열식전기보일러태양열집열기중압력용기중압력용기의 설치와 이에 부대되는 배관세관공사 공사예정금액 1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난방 시공업(제2종)	특정열사용기자재중 태양열집열기 용량5만 kcal/h이하의 온수보일러구명탄 온수보일러 설치 및 이에 부대되는 배관세관공사 공사예정금액1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난방 시공업(제3종)	특정열사용기자재 중요업요로금속요로설치공사	

비고

1. 위표의 업무내용에는 건설공사 재료의 재취 또는 그 공급업무, 기계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와 단순한 노무공급업무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건설공사에 관한 건설업종의 구분은 당해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재료시설장비 등의 유사성에 의하여 구분한다.
3. 건설업자는 당해 업종에 속하는 건설공사에 부대되는 공사로서 제21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공사의 경우는 함께 수행할 수 있다.
4. 가스사용시설중 호스의 설치 또는 교체는 가스 사용자가 할 수 있다.
5.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한 자는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와 함께 난방시공업(제1종 및 제2종에 한한다)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공사를 할 수 있다. <개정99.8>
6. 난방시공업(제1종에 한한다)을 등록한자는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가 포함된 경우 현면적 350㎡ 미만의 단독주택의 기계설비를 함께 할 수 있다.
7. 난방시공업(제2종에 한한다)의 등록을 한자는 당해 업종에 해당되는 공사가 포함된 경우 연면적 250㎡미만의 단독주택의 기계설비공사를 함께 할 수 있다.



가스공사나 난방공사 무 등록자(무허가)가 공사를 했을 때와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상호를 빌려 공사를 했을 때 적용 법률과 고발요령은 다음과 같다.

해당법령	위반시 적용법령
<p>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의 등록등)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일반건설업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전문건설업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하는 업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9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p>
<p>※가스시설공사나 난방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2에 의거 등록하여야 함</p>	
<p>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건설업자는 다른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대여 하여서는 아니된다</p>	<p>4.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한 건설업자 및 그 상대방.</p>
<p>무등록(무허가)업자가 공사를 한 경우 고발은 위와 같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1항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건설산업 기본법 제96조1항에 의거 고발하면 됩니다.</p>	<p>※ 고발장 작성은 협회 고발장 양식을 사용하되 위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현장사진, 본인확인서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p>

